

광주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등]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817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32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현, 오지원

피고, 항소인1. B

2. C

3.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Y

나. Z

다. AA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정재훈

변론 종결 2019. 8. 30.

판결 선고 2019. 11. 2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326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 '상속재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9.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 별지 '상속재산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9.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에게, 1) 피고 F는 188,652,485원 및 그 중 7,060,870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45,050,597원에 대하여는 2017. 9. 22.부터, 127,290,81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9,250,202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2) 피고 B, D, E은 각 136,541,018원 및 그 중 127,290,81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9,250,202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3) 피고 C은 133,346,035원 및 그 중 124,095,833원에 대하여는 2017. 11. 29.부터, 8,333,333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916,869원에 대하여는 2018.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평생 미혼으로 살다가 2016. 1. 17.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생활을 하던 중인 2017. 5.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버지는 1995. 12.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는 2014. 4. 5.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과 그 형제자매들은 순서대로, 피고 C(1녀), B(2남), 망 D(3남), E(4남), F(5녀), 원고 A(6남), 망인 G(7녀)이다.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8. 12. 19.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피고 Y, Z, AA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소송수계를 하였다(이하 망인의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피고들'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경과

1)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상속재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아파트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아파트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및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예금채권이 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7.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6)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1. 29.부터 2018. 2. 8.까지 H조합으로부터, 망인의 예금[2017. 9. 20. 기준 예금 892,024,112원에서 대출금 170,000,000원과 이자 1,756,820원을 제외한 750,103,531원(= 892,024,112원 - 170,000,000원 - 1,756,8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중 각 자신의 상속분(1/6)에 해당하는 금액인 127,278,993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4) 피고 F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7. 5. 25. 위 피고 명의의 J조합계좌를 개설하고, 2017. 5. 25.부터 2017. 5. 26.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J조합계좌로 합계 6,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망인 사망 후에 장례식 및 묘지조성 비용 등에 소요된 금액 및 2017. 9. 21. 위 계좌에서 7,060,87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조합계좌에는 45,050,597원이 남아 있다.

다. 망인 명의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현출

1) 피고들은 2018. 1.경 H조합으로부터 망인의 예금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H조합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대출된 합계 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H조합대출금'이라 한다)이 ① 2016. 10. 21. 60,000,000원, ② 2016. 10. 21. 110,000,000원으로 나뉘어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망인 사망 후인 2017. 8. 21. H조합에서 만기도래된 망인의 예금채권과 위 대출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8. 2.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H조합대출금 170,000,000원 관련 부당이득반환 내지 대여금 채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합3117호(청구기각) → 광주고등법원 2019나20824호(계속 중), 이하 '이 사건 H조합대출금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H조합대출금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H조합대출금은 원고가 2013. 4. 15.경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아래와 같은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그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이름 옆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망인의 인영에 의한 간인도 되어 있다.

증여계약서(유언)(갑 제8호증)

증여목록

본인 증여인은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재산(J조합, P조합, 보험회사 등) 그리고 유동재산 일체를 오빠 A에게 증여합니다.

부동산 전 재산

1.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U호(A오빠에게 1억 7천만원 차용하여 아파트 대출받지 않고 매입함)
2. 전남 해남군 V 전 496㎡ (A오빠가 내 명의로 이전해둔 토지임)

채무

1. A오빠에게 아파트 매입 시 1억 7천만원 무이자로 차용함
2. 완도 AB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3천 5백만원 차용함

유언

1. 수증인 오빠 A은 상기 모든 재산(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수증한 후 'G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으로 지불하여 인재를 육성하기로 한다.

2. 장학재단 설립 시 본인의 친형제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

단, 형제 중 B, D, F는 장학재단 이사에서 배제시킨다.

3. 단, 1, 2항은 증여의 조건은 아니며, 증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재산 등 증여계약 이행 중에 유고 발생시 증여인의 상속인들은 증여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수증인에게 이행하게 한다.

2016년 9월 18.일

증여인 G

주민번호 AC

주소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U호

수증인 A

주민번호 AD

주소 전남 해남군 AE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저의 재산권리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L앞 M 법률사무소에서 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M 법률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O은행, AF은행, AG 주식회사, H조합, AH조합, AI조합,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고,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재산이전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② 기수령한 망인의 예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의로 소비한 망인의 예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1)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망인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하지만, 그 제출 경위나 시기 및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H조합대출금 관련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는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
- 2)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유언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증여인(G)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9, 2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6, 7,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A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현출된 망인의 인영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망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한편, 2018. 1. 8. H조합으로부터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망인의 예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7,278,993원을 수령하면서 H조합에 영수증도 작성해 주는 등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갔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H조합대출금과 관련한 망인과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H조합대출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2016. 9. 18.자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즉, 원고는 형제자매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망인이 죽음을 앞둔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 형제자매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된 과정에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6. 9. 18.부터 이 사건 H조합대출금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4. 26.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망인 사망일인 2017. 5. 28.부터 약 11개월 동안) 상속재산 처리에 관한 망인의 의사가 담겨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이 사건 H조합대출금의 존재와 그 관련 소송 경위,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 사망 당시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존재하였는지가 의문스럽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A오빠에게 1억 7천만원 차용하여 아파트 대출받지 않고 매입함', 'A오빠에게 아파트 매입 시 1억 7천만원 무이자로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은

2013. 7. 13.경 AK[당초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후 AJ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AJ에 지급하였고, 기존에 보유하던 정기에탁금(H조합) 해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잔금도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그 후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회 중도금 1,870만 원	2013. 11. 10.	망인은 각 중도금을 O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납부하였다. 망인은 매월 10일경 O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2015. 8. 31. 정기에탁금(H조합 성전지점)을 해지하고 수령한 돈(228,757,241원)으로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2015. 9. 7. AJ에 잔금도 납부하였다.
2회 중도금 1,870만 원	2014. 2. 10.	
3회 중도금 1,870만 원	2014. 5. 10.	
4회 중도금 1,870만 원	2014. 8. 10.	
5회 중도금 1,870만 원	2014. 12. 10.	
6회 중도금 1,870만 원	2015. 4. 10.	
잔금 5,190만 원	입주지정일	

③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A오빠가 내 명의로 이전해 둔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원고이고,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7. 12.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오히려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점, 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작성된 2016. 9. 18.을 말한다) 이후로 얼마든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로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원고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의문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망인의 계좌(J조합 AL)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6. 10. 17. 6,000만 원, 2016. 10. 21.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1억 1,000만 원은 같은 날 망인이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7,000만 원의 일부이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였다(즉, 위 망인 계좌의 잔고는 변동이 없다). 위 망인 계좌의 잔고는 위 2016. 10. 21.부터 망인의 사망 이후로 피고 F에 의하여 예금의 대부분이 인출될 때까지 5,8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조합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일 개연성이 높다.

⑤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에 유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증여인'란과 '수증인'란에 당사자의 인영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증여인'란에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작성방식이나 형식의 문서는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데, 망인이 생전에 사용한 노트북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인감도장 등은 망인의 유품에서 발견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으므로, 당시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직전에 망인이 입원하여 있던 전남 해남군 소재 병원에 주로 출입한 망인의 친족은 인근에 거주하던 피고 F와 그의 자녀들(AM, AN) 및 원고의 자녀(N)였으므로, 피고 F 또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⑥ 망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였다면, 재산의 손실이 없는 방법으로 충분히 장학사업을 할 수 있었음도 불구하고, 망인의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후 원고로 하여금 장학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만큼 기본재산이 줄어드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⑦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변호사 M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부터 '유언공증'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6. 9. 18.로 당시 상속재산의 처분이 끝났다면, 그 후에도 망인이 계속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상담할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내용도 망인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다음 원고가 이를 처리한다는 것으로서 유언공증이라는 위 상담내용과 많이 다르다. 더구나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증여 부분은 망인의 사망 전에 증여의무를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망인 생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의무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특히,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그 제목이나 내용에서 유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중 유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므로(민법 제137조 본문),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유언 이외의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유언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장학재단 설립은 증여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 전부를 증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유언 부분 제3항에는 "단, 1, 2항(장학재단 설립 및 피고 B, F, 망 D의 배제)이 증여의 조건은 아니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 갑 제8, 2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생전에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는 점, ② 망인은 고통스러운 투병생활 중에 자기 곁을 지켜준 사람이 없어 외로워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원고에게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설령 망인이 상속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유언 관련 내용에 해당할 뿐, 이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하는 내용이 주목적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유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태현

판사 윤봉학

판사 장진영

별지